



보도시점 2026. 9. 16.(수) 13:00

배포

2026. 9. 16.(수) 06:00

우리 마을 농촌특화지구, 주민 손으로 만든다... 농식품부, 홍성군에서 주민들과 현장 소통

- 마을보호지구 지정 준비 중인 홍성 문산·은하 찾아 주민협정 체결·운영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6일(수)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전한영 농촌정책국장 주재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군 박성철 부군수, 홍동면 문산마을·은하면 대천마을 주민,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주민협정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한 자치 규약을 스스로 정해 체결하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자율적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농촌특화지구를 관리하는 공식 기준이 된다. 농촌특화지구를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정한 규칙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주민 주도 농촌공간 관리의 핵심 수단이다.

홍성군 은하면 대천마을과 홍동면 문산마을은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이곳을 실증 대상으로 주민협정 운영 매뉴얼과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있으며, 연내 완성하여 전국 시·군에 보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두 마을 대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협정(안)을 소개하였다. 한때 100가구가 넘게 살다 49가구로 줄어든 은하면 대천마을은 다시 100가구 마을로 돌아가겠다는 목표 아래 악취·환경오염 시설이 들어설 때 주민 협의를 거치고, 야간 조명과 공동 주차장을 함께 관리하는 약속 등을 협정에 담았다. 유기농 생태마을인 홍동면 문산마을은 새 축사, 대규모 묘지, 태양광 발전 시설 등 개발행위에 마을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성군은 주민협정 인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협정 지원 근거를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가된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시행계획 내용에 반영 후 12월 중 고시·공고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관리가 주민의 합의에서 출발하도록 설계한 제도로, 홍성 문산·은하 지구는 주민협정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결정하고 지방·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향식 구조를 농촌공간 정책 전반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요
2.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개요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1551)
		담당자	사무관	이동언 (044-201-1556)



◆ 문산·은하 농촌마을보호지구 주민협정 추진현황 점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협정 체결 사례 조성, 매뉴얼 제작 및 제도 확산 논의

□ 개요

- **(일자)** '26. 9. 16. (수) 10:00~12:00
- **(장소)** 문당환경농업교육관 (홍성군 홍동면 문당길 141)
- **(참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한국농어촌공사, 홍성군, 문산·은하 주민협정 대상지 주민(이장·주민협의회), (주)지역활성화센터 등

□ 주요내용

- 문산·은하 농촌마을보호지구 주민협정 추진 경과 및 의견수렴
- 주민협정 실증연구 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등 공유

□ 세부일정(안) ※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5(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0:05~10:10(5')	○ 농촌정책국장님 인사말씀	농식품부
10:10~10:15(5')	○ 홍성군 부군수 인사말씀	홍성군
10:15~10:25(10')	○ 문산·은하 농촌마을보호지구 소개	마을대표
10:25~10:55(30')	○ 주민협정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주)지역활성화센터
10:55~11:10(15')	○ 주민협정 추진계획 및 조례제정 방향	홍성군
11:10~11:50(40')	○ 참여자 자유토론	
11:50~12:00(10')	○ 향후 일정 안내 및 폐회	(주)지역활성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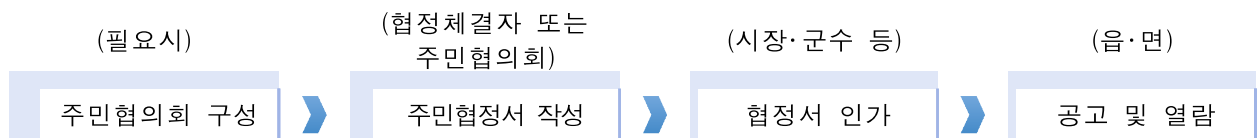
- (근거법령)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2조(주민협정), 제24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제23조(주민협의회) : 주민협정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

- (목적)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개발·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마련·이행

- (협정체결자)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소유자, 조례로 정하는 자

- 협정체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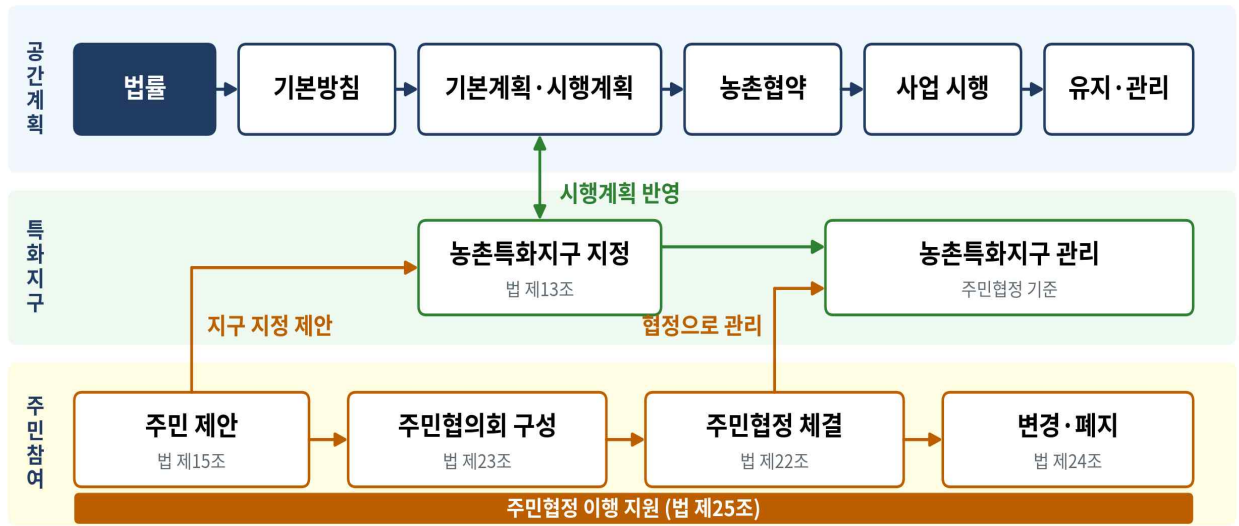
- 필요시 시장·군수 등의 승인으로 주민협의회 구성
-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주민협정서를 작성
 - * 주민협정의 명칭,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주민협정의 목적 및 내용,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협정 유효기간, 협정 위반 시 제재,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가 주민협정서 및 설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 등이 주민협정을 인가
- 주민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공보에 게재, 주민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관할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30일 이상 열람

- (협정의 변경·폐지)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체결 시와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및 공고 절차 적용

- (이행지원) 농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등은 주민협정서 작성, 주민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등은 지원 여부 결정·통보

□ 제도 체계



□ 주요내용 및 절차

주민제안 (법 제15조)	(주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넓게 인정 (목적) ① 특화지구지정 제안, ② 사업제안, ③ 특화지구지정 & 사업 제안 (승인) 시장·군수
주민협의회 구성 (법 제23조)	(주체) 협정체결자(다수) (목적) 22조 주민협정 체결 및 추진
주민협정 이행 지원 (법 제25조)	(구성) 대표자 포함 5~25명,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승인) 시장·군수 (권한) 협정서 작성, 협정의 이행 및 관리, 협정의 변경 및 폐지
주민협정체결 (법 제22조)	(주체) 주민 등 (13조 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소유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자) = 협정체결자 (목적) 농촌특화지구 지정, 개발,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마련, 이행을 위함 (이행) 주민협정서 작성 (협정서 작성)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 (승인) 시장·군수
주민협정변경 및 폐지 (법 제24조)	(주체)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 (변경 및 폐지)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협정 체결자 지위 승계) 주민협정 대상 구역 (승인) 시장·군수 (22조 3항, 4항 절차 준용)
주민협정이행지원 (법 제25조)	(주체) 장관, 시장·군수 (목적) 주민협정서 작성 및 협정체결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전제)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